

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(제10조제3항 관련)

1. 일반 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(법 제 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)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.

1) 위반행위가 모두 제2호나목2)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: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,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2) 위반행위 중 제2호나목2)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: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. 다만, 제2호나목2) 외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제2호나목2) 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1)의 단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되, 제2호나목2)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이 더 긴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분한다.

라.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.

마. 행정처분권자는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 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.

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

으로 인정되는 경우
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검진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, 2년 이상 국가 건강검진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
- 5) 위반 행위자가 국가건강검진이나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경우

## 2. 개별 기준

가.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(이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법령          |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|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1차 위반          | 2차 위반    | 3차 이상 위반 |
| 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6조 제1항제1호 | 지정취소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2)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6조 제1항제2호 | 업무정지 3개월       | 업무정지 6개월 | 지정취소     |
| 3)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6조 제1항제3호 | 업무정지 3개월       | 업무정지 6개월 | 지정취소     |
| 4)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6조 제1항제4호 | 업무정지 6개월       | 지정취소     |          |
| 5)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·판정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| 법 제16조 제1항제4호 | 지정취소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6) 「의료법」 또는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업무의 범위를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| 법 제16조 제1항제4호 | 업무정지 6개월       | 지정취소     |          |
| 7) 국가건강검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                  | 법 제16조 제1항제5호 | 업무정지 3개월       | 지정취소     |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여 검진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호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8)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6조 제1항제5호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
| 9)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          | 법 제16조 제1항제5호 | 업무정지 3개월 | 지정취소     |          |
| 10)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     | 법 제16조 제1항제5호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가)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두 번 연속하여 받은 경우  |               | 업무정지 3개월 |          |          |
| 나)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세 번 연속하여 받은 경우  |               | 지정취소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11)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 | 법 제16조 제1항제5호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2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

나.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

1) 관련 서류를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: 지정취소

2)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

가) 1차 위반 시의 기준: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

(단위: 일)

| 연평균<br>부당청구액         | 부당비율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| 1% 미만 | 1% 이상<br>2% 미만 | 2% 이상<br>3% 미만 | 3% 이상<br>4% 미만 | 4% 이상<br>5% 미만 |
| 10만원 미만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| 7              | 10             | 20             |
| 10만원 이상<br>50만원 미만   |       | 7              | 10             | 20             | 30             |
| 50만원 이상<br>100만원 미만  | 7     | 10             | 20             | 30             | 40             |
| 100만원 이상<br>200만원 미만 | 10    | 20             | 30             | 40             | 50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
| 200만원 이상<br>350만원 미만   | 20 | 30 | 40 | 50 | 60 |
| 350만원 이상<br>650만원 미만   | 30 | 40 | 50 | 60 | 70 |
| 650만원 이상<br>1,000만원 미만 | 40 | 50 | 60 | 70 | 80 |
| 1,000만원 이상             | 50 | 60 | 70 | 80 | 90 |

비고

1. 연평균 부당청구액은 조사대상기간(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) 동안 검진기관이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공단에 청구한 검진 비용(이하 "부당청구액"이라 한다)을 부당청구액이 발생한 연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
2. 부당비율은 (부당청구액/부당청구액이 발생한 연도마다 검진기관에 지급된 건강검진비용 총액) × 100으로 산출한다.
3. 연평균 부당청구액 및 부당비율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의 구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다.
4. 부당비율이 5%인 경우에는 부당비율이 4% 이상 5% 미만인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에서 3일을 가산하고, 부당비율이 5%를 초과하는 경우(소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올림한다)에는 초과 1%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,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다.

나) 2차 위반 시의 기준: 가)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기간에 1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되,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다.

다) 3차 이상 위반 시의 기준: 가)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기간에 2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되,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다.